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30
----------	------

제출년월일 : 2012. 9. .
제출자 : 충주시장

1. 제안이유

-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협약을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시험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등록된 자로 확대하여 참여기회 부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중 광역상수도 보급지역 내 소유자에게 상수도 급수공사비를 지원하여 재정부담 완화.
-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의 사용량 인정 시 급수업종을 가정용 단일 업종으로 한정하여 수혜자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정수처분 시 사용요금의 납세보전을 위해 처분대상을 보완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수도요금 연체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체납했을 때에는 단수조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신설.

2. 주요내용

- 가.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협약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등록된 자로 확대. (안 제10조제1항)
- 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상수도 급수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4조제5항)
- 다.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의 사용량 인정 시 급수업종을 단일화 하는 단서조항 추가. (안 제31조3항)
- 라. 정수처분 대상에 누적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수용가 추가. (안 제43조1항1호)
- 마. 기초생활수급자의 정수처분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3조3항)

3. 의안전문 : 별 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첨

5. 관계법령 발췌 : 별 첨

6.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별 첨

7.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결과 :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결과 : 의견접수사항 없음

9. 그 밖의 참고자료

- 규제심사 : 협의완료
- 부패영향 평가 : 협의완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완료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여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접수사항 없음

10. 제안부서 의견 : 금번 조례 개정안은 「한글맞춤법 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기초수급자에게 단수조치 유예와 급수 공사비를 지원하며 급수공사 대행업자 등록에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함.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8조에 따라”로, “부담구분 및 기타”를 “부담구분, 그 밖의”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분기하여”를 “갈라져”로, “옥내”를 “건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선 및”을 “수선,”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소유자 및”을 “소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흡수정 이하의 장치”라 함은”을 ““흡수정 이하의 장치”란”으로, “흡수정 및”을 “흡수정과”로, “일체의”를 “모든”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을 ““특수가압시설”이란”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충주시의”를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을 “고쳐 본래 형태와 같게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을 “불필요할 때 급수관과 떨린”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경우에”를 “때에는”으로, “신청에 의하여”를 “신청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필요하다”를 “가구별 계량기 설치가 필요 없다”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제5항 중 “장치 및”을 “장치와”로,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을 “필요하면”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있을 경우”를 “있으면”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필요하다”를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필요없다”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경우 주 계량기 및”을 “때에 주 계량기와”로, “공지”를 “빈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준”을 “기준”으로,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을 “않은 세대는 공사비와 같이 분담금을 납부하여야만 세대별 계량기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을 “안에 있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을 “계량기로 급수되고 있거나”로,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을 “있어 보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려는 수도사용자 등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설계 및”을 “설계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바에”를 “바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공사에 있어서”를 “공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 한다”를 “자재검사를 생략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를 “시장이 직접 시공하는 급수공사”로, “경우”를 각각 “때”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포장,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제5항 중 “착공을”을 “공사를 시작할 때”로, “통보함”을 “통지함”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을 “허가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등록된 자
제10조제1항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서를 발급할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

분 중 “지정서”를 “허가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및 지정, 급수 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 시험 실시 등”을 “등에”로 한다.

제11조 중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를 “참관하에 시행되어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를 “(공사비 부담과 급수 설비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옥외”를 “건물 밖”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관리자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항 외에”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을 “개조하는 공사의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옥외”를 “건물 밖”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경우”를 “때”로, “옥내”를 “건물 안”으로, “등에 대하여는”을 “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을 “않다고 판단하면”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준공검사수수료 및”을 “준공검사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비를 가산한다”를 “실제비용을 더하여 계산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선납하여야”를 “미리 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낼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는 그렇지 않다.

제14조제2항 중 “아니한”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선납된”을 “미리 낸”으로, “환급 또는 추징한다”를 “환급하거나 추가로 징수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를 “제3항의”로, “수도요금 및”을 “수도요금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용 수도전의 공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중 “각호별”을 각각 “호별”로, “경우에”를 “때”로, “각호별로 산정한다”를 “호별로 계산해서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급수장치에 대하여는”을 “급수장치에는”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특수가압시설 설치 시 설계와 공사비의 부담 납부·산출 방법은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7조제2항 중 “설치공사에 있어서”를 “설치공사에서”로, “설계 및”을 “설계와”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기타 사유에 의하여”를 “그 밖의 사유에 따라”로, “철거 및 손괴”를 “철거, 파손”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금 및”을 “요금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를 “이의는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를 “하자확인, 시공자의 보수”로, “바에”를 “바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현금 또는”을 “현금,”으로,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을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은”으로, “바에”를 “바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아니하고는 수도를”을 “않고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바에”를 “바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체 없이”를 “바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31조제2항 및”을 “제31조제2항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를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시장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입회하”를 “참관하”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검침 및”을 “검침과”로, “적치하거나”를 “쌓아두거나”로, “하여서는 아니”를 “해서는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과”로, “태만히함”을 “계을리함”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부수한다”를 “따라간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변동되는 경우에”를 “변동되면”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변경 시에는 그렇지 않다.

제25조의 제목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을 “(급수정지와 사용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그 밖에 부득이 할 때”로, “인정하는 경우”를 “인정할 때”로, “일부에 대하여”를 “일부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를 “이때 시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급수정지 및”을 “급수정지와”로, “예고하여야”를 “알려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를 “있을 때에는 신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을 “않은 주택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따로 정할 때

제26조제4항 중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을 “폐전할 때에는 갈라진”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급수전에 대하여는”을 “급수전은”으로, “일괄”을 “한꺼번에”로 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중 “업종구분에”를 “업종구분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인정되는 경우”를 “인정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을 “수도계량기로 쟁 때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를 “잰 사용수량에 따라”로, “미만인 경우에”를 “미만일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를 “수시로 사용량을 한꺼번에 재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과 제2항에서”로,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을 “사용수량을 부득이하게 쟁”로, “전후”를 “앞뒤”로, “실시하여야”를 “재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하여 계량한다”를 “따라

잰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용수량에”를 “사용수량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하는 경우”를 “사용할 때”로,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를 “평균량으로 계산해서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를 “평균량으로 계산해서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급수 업종과 같이 사용할 때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31조제4항 중 “사용하는 경우”를 “사용할 때”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초과하는 경우”를 “초과할 때”로,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을 “사용량과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이 과하거나 부족할”로, “추징”을 “추가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경우”를 “때”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연체금이 가산된”을 “연체금을 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폐전 및 기타”를 “폐전, 그 밖에”로 한다.

제34조 본문 중 “때로부터”를 “때부터”로, “상당”을 “상응”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기관은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을 “납부고지서로 고지하되, 수도사용자가 동의하면 전자고지(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병기하여”를 “함께 적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월분”을 “그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경우”를 “때에”로 한다.

제36조 중 “사유로 인하여”를 “사유로”로,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운반급수 신청자의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급수구역 내외와 급수설비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반급수를 할 때에는 수도요금 예정수량을 추가로 징수하여 미리 내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운반급수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해당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

제3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한다”를 각각 “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43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는 다음 각 목과 같음.

가. 계량기 구경 50밀리미터까지 : 1만5천원

나. 계량기 구경 75밀리미터 이상 : 3만원

다. 잠금장치를 사용했을 때 : 무료

제39조제2항 중 “등에 대하여는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에”를 “등은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을 “해당하면 수도요금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수도시설 및”을 “중수도시설과”로, “중인 경우”를 “중일 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정하는 경우”를 “정하였을 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있는 경우”를 “있을 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납부하는 경우”를 “납부할 때”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하는 경우”를 “인정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감면회수 및”을 “감면횟수,”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검사결과”를 “시장은 검사결과”로, “수돗물이 수질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을 “수돗물의 수질기준이 부적합하면”으로, “세척·갱생 또는 교체”를 “세척·재생·교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세척·재생·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1조제3항제1호 중 “출수되는 경우”를 “출수될 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초과하는 경우”를 “초과할 때”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사용자변경 등”을 “사용자변경, 누적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수용가 등에”로, “필요한 경우”를 “필요할 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아니하”를 “않”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남용하거나 급수를”을 “함부로 쓰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사회복지분야”를 “사회복지”로, “조회하는 등”을 “조회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6개월 유예 등의”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포상금을”을 “포상금으로”로, “자에 대하여도 예산 범위안”을 “자에게도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부정급수 적발 등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었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44조제3항 중 “제1항 및”을 “제1항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을 “(수도 계량기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해당”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과 파손자부담금 비용산출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6조제1항제1호 중 “소요되”를 “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돗물의”를 “수돗물”로, “실제누수량 및”을 “실제누수량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용 및”을 “사용 경비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급수차 및”을 “급수차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요되”를 “드”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정부노임단가 및”을 “정부노임단가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가목 중 “누수 및”을 “누수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용 및”을 “사용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인부임”을 “품삯”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가격에 의한다.”를 “가격”으로 한다.

제47조 본문 중 “사기 기타”를 “사기, 그 밖의”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를 “자와 급수시설을 부정으로 사용한 자”로, “추징하는”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으로, “과태료 및”을 “과태료와”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인정되는 경우”를 “인정될 때”로 한다.

제48조 제1항 중 “아니하”를 “않”으로, “자에 대하여는”을 “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인정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을 “제1항과”로 한다.

제49조 제1항 중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경비절감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할 경우에는”을 “위탁한 시장은”으로, “지원과”를 “를 지원하고”로 한다.

제50조 제1항 본문 중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를 “사용요금과 그 밖의 납부금 조정 · 징수에”로 한다.

제51조 중 “조례에 따른”을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으로,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을 “그 밖의 모든 징수금은”으로, “예에”를 “예를”로 한다.

제52조 본문 중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을 “수도요금과 수수료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징수금에 대하여는”을 “징수금은”으로 한다.

제5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u>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u> 충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u>부담구분 및 기타</u>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제38조에 따라 -----</u> ----- ----- <u>부담구분, 그 밖의</u>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u>분기하여</u> 설치된 급수관(<u>옥내</u> 급수관을 포함한다) · 계량기 · 저수조 · 수도꼭지 ·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u>수선 및 철거</u>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 설비의 사용자, <u>소유자</u>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생 략) 5. “흡수정 이하의 장치”라 함은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 <u>갈라져</u> ----- <u>건물 안</u> ----- ----- ----- -----. 2. ----- ----- <u>수선,</u> ----- -----. 3. ----- ----- <u>소유자,</u> -----. 4. (현행과 같음) 5. “흡수정 이하의 장치”란 --

현 행	개 정 안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u>일체의</u> 급수시설을 말한다.	----- ----- 흡수정과 ----- ----- 모든 ----- -----.
6.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6. “특수가압시설”이란 ----- ----- ----- -----.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u>충주시</u> 의 관할구역 중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사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 할 수 있다.	제3조(급수구역) ----- 충주 시(이하 “시”라 한다)의 ----- ----- -----. ----- ----- ----- -----.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 ----- -----.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u>새로이</u>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1. ----- 새로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u>수리하여</u> 원형을 <u>수복하는</u> 공사	3. ----- ----- 고쳐 본래 형태와 같게 하는---

현 행	개 정 안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 가가 관리한다.	----- -----.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u>수전으로</u> <u>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u>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u>있는 경우 수도</u> <u>사용자 등이 보조수도 계량기를</u> <u>설치하고자 할 때에는</u>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 ----- <u>계량기로</u> <u>급수되고 있거나 -----</u> ----- <u>있어 보조수도</u> <u>계량기를 설치하려는 수도 사용자</u> <u>등은 -----</u> -----.
제8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u>인정하는</u> <u>경우에는</u>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의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 <u>인정</u> <u>하면 -----</u> -----.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를 수의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사용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 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	제9조(공사의 시행) ① ----- 설계와 -----. ----- ----- ----- ----- ----- ----- -----. ② ----- -----

현 행	개 정 안
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u>바에</u> 따른다.	----- ----- 바를 -----.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u>공사에 있어서는</u>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③ ----- 공사 ----- ----- ----- ----- 자재검사를 생략한다.
④ <u>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u>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장이 직접 시공하는 급수 공사----- ----- ----- 때----- -----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포장,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⑤ 시공업자 또는 대행업자는 <u>착공을</u> 시장에게 문서로 <u>통보함과</u>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 공사를 시작할 때 ----- 통지함 ----- -----.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 공사 대행업자는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u> 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 ----- 허가를 ----- -----.
1.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자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현 행	개 정 안
<p><u>격검정시험(이하 “검정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u></p> <p><u>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u></p> <p><u>② 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수수료를 징수 한다.</u></p> <p><u>1.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2천원</u></p> <p><u>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 수수료 1건당 1천원</u></p> <p><u>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수수료</u></p> <p> 가. · 나. (생 략)</p> <p><u>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 검정 시험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11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 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p>	<p><u>상 · 하수도설비공사업에 등록 된 자</u></p> <p><u>2. ----- 따른 -----</u></p> <p><u>-----</u></p> <p><u>-----</u></p> <p><u>-----</u></p> <p><u>② 시장은 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서를 발급할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징수한다.</u></p> <p><u><삭 제></u></p> <p><u><삭 제></u></p> <p><u>3. ----- 허가서 -----</u></p> <p><u>-----</u></p> <p><u>가. · 나. (현행과 같음)</u></p> <p><u>③ ----- 등에 -----</u></p> <p><u>-----</u></p> <p><u>-----</u></p> <p><u>제11조(준공검사) -----</u></p> <p><u>-----</u></p> <p><u>-----</u></p>

현 행	개 정 안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참관하에 시행되어야 -----.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u>옥외</u>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u>당해</u>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u>인한</u> <u>개조공사</u>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과 급수설비 관리) ① 건물 밖 ----- ----- ----- 해당 -----. 다만, 관리자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항 외에 ----- ---- 개조하는 공사의 비용--- -----.
② 급수설비 중 <u>옥외</u> 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u>의하여</u> 시의 소유로 한다.	② ----- 건물 밖--- ----- ----- 따라 ----- -----.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 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 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 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u>옥내</u> 급수 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③ ----- ----- ----- ----- 때----- ----- ----- 건물 안 -- ----- 등은 ----- -----.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④ ----- ----- ----- ----- 않다고 판단하면 -----

현 행	개 정 안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 할 수 있다.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 복구비, 설계수수료, <u>준공검사</u> <u>수수료</u> 및 시공자재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u>실비를</u> <u>가산한다.</u>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 ----- ----- <u>준공검사</u> <u>수수료</u> , ----- -----. ② ----- ----- <u>실제비용을</u> <u>더하여 계산한다.</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 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u>선납하여야</u> 한다. <u>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u> <u>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u> <u>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u>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u>아니한</u> 때 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u>선납된</u>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u>환급</u> 또는 <u>추징한다.</u> 다만, 공사비를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 ----- ----- ----- <u>미리 내야</u> ---. <u>다만, 시장이 미리 낼 필요가</u> <u>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는</u> <u>그렇지 않다.</u> ② ----- ----- <u>않을</u> --- ----- -----. ③ <u>미리 낸</u> ----- ----- ----- <u>환급</u> <u>하거나 추가로 징수한다.</u> <단서 삭제>

현 행	개 정 안
<p><u>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p> <p>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 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④ 제3항의 ----- ----- 수도요금과 ----- -----.</p> <p>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용 수도전의 공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p>
<p>제15조(시설 분담금) ① (생 략)</p> <p>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 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산정한다.</p> <p>③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 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p> <p>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장치와 임시용 수도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p>	<p>제15조(시설 분담금)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호별----- -----때----- -----호별로 계산해서 정한다.</p> <p><삭 제></p> <p>④ ----- ----- ----- 급수 장치에는 -----</p>

현 행	개 정 안
감면할 수 있다.	-----.
제16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 · ② (생 략)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특수가압시설 설치 시 설계와 공사비의 부담 납부 · 산출 방법은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7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생 략)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설치 공사에서 ----- ----- 설계와 ----- -----.
제18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 그 밖의 사유에 따라 ----- ----- 철거, 파손 ----- ----- ----- 해당 ----- -----. ② ----- ----- 요금과 ----- -----.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

현 행	개 정 안
<p>이해관계인 등의 <u>이의에 대하여는</u> <u>당해</u>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p> <p>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u>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u> <u>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u> <u>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u></p> <p>준용한다.</p> <p>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u>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u> <u>보수에 관하여는</u>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u>현금</u> <u>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u> <u>국공채</u>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u>기타</u>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이의는 <u>해당</u> ----- -----.</p> <p>② ----- 등은 <u>「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u> <u>계약에 관한 법률」과 ----- ----- -----.</u></p> <p>③ ----- <u>하자확인, 시공자의</u> <u>보수</u>----- -- 바를 -----.</p> <p>④ ----- 현금, ----- ----- <u>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은</u> ----- ----- 바를 -----.</p> <p>제20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u>당해</u>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u>아니하고는</u> <u>수도를</u>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u>의하여</u>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20조(수도의 사용) ① ----- ----- <u>해당</u> ----- ----- <u>않고는</u> -----. ----- ----- 따라 ----- ----- 그렇지 않다.</p> <p>② ----- ----- 바를 -----.</p>

현 행	개 정 안
<p>③ (생 략)</p> <p>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u>지체 없이</u>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u>기타</u>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u>제31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u> 4. (생 략) <p>② <u>기타</u> 시장이 정하는 <u>신고 사항</u>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1조(신고) ① ----- ----- ----- 바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그 밖에 ----- 3. 제31조제2항이나 ----- ----- 4. (현행과 같음) <p>② 그 밖에 ----- 신고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시장은 ----- ----- ----- -----. -----.</p>
<p>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생 략)</p> <p>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u>입회하</u>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p>	<p>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참관하----- -----.</p>
<p>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생 략)</p>	<p>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u>검침 및 유지 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u>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u>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u>(누수, 파손, 분실 등)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p>	<p>② ----- ----- 검침과 -- ----- 쌓아 두거나 ----- 해서는 안 -----</p> <p>③ 제1항과 ----- 게을리함----- ----- -----.</p>
<p>제24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 설비에 관한 권리 의무는 <u>당해</u>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u>부수한다.</u></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급수 설비에 관한 권리 · 의무가 <u>변동</u> 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 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u>다만,</u> <u>경매,</u>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4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 ----- 해당 ----- ----- 따라간다.</p> <p>② 제1항에 따라 ----- ----- 변동 되면 ----- ----- -----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변경 시에는 그렇지 않다.</p>
<p>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u>기타</u>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p>	<p>제25조(급수정지와 사용제한) ① ----- 그 밖에 부득이할 때 ----- 인정할 때 ----- 일부의 ----- -----. 이 때 시장은 -----</p>

현 행	개 정 안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u>예고 하여야</u>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급수정지와 ----- ----- 알려야 ----. ----- -----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26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 사용자 등은 필요에 <u>의하여</u>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 ----- 따라 --- ----- -----.
②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u>의거하여</u>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② ----- ----- 있을 때 에는 신청에 따라 ----- -----. 않은 주택은 ----- -----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 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③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u>아니할</u> 때	2. ----- ----- 않을 --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따로 정할 때
④ 급수설비를 <u>폐전하는</u> 경우에는	④ ----- 폐전할 때에는

현 행	개 정 안
<p><u>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u></p> <p>제28조(수도사용 요금) ① · ② (생 략)</p> <p>③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u>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u></p>	<p>갈라진 ----- ----- -----.</p> <p>제28조(수도사용 요금) ① · ② (<u>현행과 같음</u>)</p> <p>③ ----- --- 급수전은 ----- ----- ----- ----- 한꺼번에 -----.</p>
<p>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의 <u>업종 구분</u>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u>인정되는 경우에는</u>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p> <p>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u>수도계량기</u>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p>	<p>제29조(업종의 구분) ① ----- -----업종 구분을 -----. ----- ----- 인정할 때----- ----- ② ----- ----- 수도계량기로 챌 때의 ----- ----- ----- -----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 -----.</p>
<p>제30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u>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u></p>	<p>제30조(요금의 조정) ① ----- ----- 잰 사용수량에 따라 ----- -----</p>

현 행	개 정 안
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 미만일 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 할 수 있다.	② ----- ----- -- 수시로 사용량을 한꺼번에 재서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 사용수량을 부득이하게 절 ----- 앞뒤 ----- 재야 -----.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 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 3. (생 략) 4.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단서 신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 따라 잰다. ----- ----- 사용수량을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② ----- 사용할 때 ----- ----- 평균량으로 계산해서 정한다. ③ ----- 않은 ----- ----- ----- 평균량으로 계산해서 정한다. 다만, 다른 급수

현 행	개 정 안
	<u>업종과 같이 사용할 때는 인정하지 않는다.</u>
<p>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u>사용하는 경우</u>에는 제2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p> <p>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p> <p>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u>초과하는 경우</u>에는 그 월분의 <u>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초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u></p> <p>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u>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u></p>	<p>④ ----- ----- 사용할 때 ----- ----- ----- ----- ----- ----- -----.</p> <p>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초과할 때 ----- 사용량과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이 과하거나 부족할 때 ----- 추가 징수 ----- -----.</p> <p>③ ----- ----- -----. ----- 때 ----- -----.</p>
<p>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생 략)</p> <p>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u>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u></p>	<p>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연체금을 더한 -----</p>

현 행	개 정 안
정하여 징수한다.	-----.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u>폐전 및 기타</u>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 폐전, 그 밖에 ----- ----- -----.
제34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 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u>때로부터</u> 체납액의 100분의 3에 <u>상당</u> 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u>기관에 대하여는</u>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가산금) ----- ----- ----- 때부터 ----- 상용--- -----. ----- 기관은 그렇지 않다.
제35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u>납부 고지서에</u> 의하여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제35조(납부고지) ① ----- 납부고지서로 고지하되, 수도사용자가 동의하면 전자고지(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 사용료 등과 <u>병기하여</u> 발행할 수 있다.	② ----- ----- 함께 적어 ----- -----.
③ 미납액 누계를 <u>당월분</u>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③ ----- 그달분 -----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 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④ 제2항에 따라 ----- ----- 때에 ----- -----

현 행	개 정 안
납부하여야 한다.	-----.
제36조(임시 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구역에 한하여 제20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임시 급수) ----- ----- 사유로 ----- ----- 자에게----- ----- -----.
제37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 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운반급수 신청자의 서류를 검토 하여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급수구역 내외와 급수 설비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 급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반급수를 할 때에는 수도요금 예정수량을 추가로 징수하여 미리 내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운반급수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38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 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제38조(수수료) 시장은 해당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 한다. 1. ----- ----- 함. 2. ----- ----- ----- 함.

현 행	개 정 안
3. 제9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3. ----- ----- 함.
4. 제32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는 검사기관의 수수료 금액으로 한다.	4. ----- ----- --- 함.
5. 제43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계량기구경 50미리미터 까지 1만5천원·계량기구경 75미리미터 이상 3만원·잠금 장치를 사용한 경우에는 무료	5. 제43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는 다음 각 목과 같음. 가. 계량기 구경 50밀리미터까지 : 1만5천원 나. 계량기 구경 75밀리미터 이상 : 3만원 다. 잠금장치를 사용했을 때 : 무료
제39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생 략) ② 수돗물 수질검사 등에 대하여는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39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등은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를 -----.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사용 중인 경우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공동주택(20호 이상)으로 주 계량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 ----- 해당 하면 수도요금과 ----- -----. 1. 중수도시설과 ----- ----- 중일 때 2. ----- ----- 정하였을 때 3. -----

현 행	개 정 안
기만 있고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	----- 있을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4. ----- 따라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 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6. ----- ----- 납부할 때
7.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그 밖에 ----- -----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 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범위, 감면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 ----- 감면횟수, ----- -----.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생 략)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 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수돗물의 수질기준이 부적합하면 ----- ----- ----- 세척·재생· 교체 ----- -----.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 · 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세척·재생·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u>출수되는 경우</u>	1. ----- ----- 출수될 때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 기준을 <u>초과하는 경우</u>	2. ----- ----- ----- ----- ----- ----- 초과할 때
제43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에 대하여</u>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제43조(정수처분) ① ----- ----- 자에게는 ----- -----.
1. 사용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 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u>기타</u>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경매, 소유권 이전, <u>사용자 변경</u> 등 사용요금 납세보전을 위하여 급수 중지가 <u>필요한 경우</u> 납부기간 경과 후 즉시 정수처분 할 수 있다.	1. ----- ----- 그 밖에 ----- ----- ----- 사용자 변경, 누적 채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수용가 등에 ----- 필요할 때는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허가를 받지 <u>아니하고</u>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5. ----- 않----- ----- -----
6. 급수를 <u>남용하거나</u> 급수를 판매한 자	6. ----- 합부로 쓰거나 ----- -----

현 행	개 정 안
7.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생 략)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수처분 시 <u>기초생활수급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부서에 조회하는 등</u>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사회복지 ----- 조회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6개 월 유예 등의 ----- ---. 제44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민간인에게 처분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u>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 범위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u> ② <u>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u> 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제45조(<u>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u>)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u>망실하였을</u>	제45조(<u>수도계량기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u>) ----- ----- <u>잃어버렸을</u>

현 행	개 정 안
<p>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p> <p>제46조(부담금 징수) ① 법 제71조 및 제72조와 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비용산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u>소요되는</u> 공사비 2. <u>수돗물의</u> 요금 : <u>실제누수량</u> 및 관 안의 퇴수량 3.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 및 홍보경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급수차 및 장비 사용료 나. 기타 홍보에 소요된 경비 (차량, 인력 등)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출방법은 각 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u>소요되는</u> 공사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재비, 인건비 : <u>정부노임 단가</u> 및 거래 실제가격 나. (생 략) 2. 수돗물의 사용요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u>누수 및 퇴수량</u> 요금 : 	<p>때에는 해당 ----- -----.</p> <p>제46조(부담금 징수) ①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과 파손자부담금 비용산출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드--- 2. 수돗물 ----- 실제누수량과 ----- 3. ----- 사용 경비와 ----- 가. 급수차와 ----- 나. 그 밖에 ----- <p>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드--- 가. ----- 정부노임 단가와 ----- 나. (현행과 같음) 2. ----- 가. 누수와 -----

현 행	개 정 안
일반용의 최종단계 요율 적용	-----
3.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 및 홍보경비	3. ----- 사용과 -----
가. 인건비 : 정부노임단가 등 보통 <u>인부임</u>	가. ----- 품삯
나. 차량동원비 : 실거래 <u>가격에 의한다.</u>	나. ----- 가격
제47조(과태료 등) <u>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 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 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u>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7조(과태료 등) 사기, 그 밖의 -----자와 급수 시설을 부정으로 사용한 자--- 추가로 납부하는 것 -----과태료와 ----- 인정될 때-----.
제48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u>아니하고</u> 급수설비를 신설한 <u>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u>	제48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 않-----자의 -----.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u>기타</u> 사유로 급수 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 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 그 밖의 ----- 인정되면 -----.
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u>	③ 제1항과 -----

현 행	개 정 안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
제49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정업무의 일부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49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 경비절감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하면 ----- ----- ----- -----. ② ----- 위탁한 시장은 ----- 를 지원하고 -----.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생 략)	제50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과 그 밖의 납부금 조정·징수에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가산금,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1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 -----그 밖의 모든 징수금은 ----- 예를 -----.
제52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제52조(소멸시효) 수도요금과

현 행	개 정 안
<p><u>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u>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u>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u></p> <p>제5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u>시행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수수료의 -----</u> <u>-----.</u> <u>-----</u></p> <p><u>징수금은 -----</u> <u>-----.</u></p> <p><u>제54조(시행규칙) -----</u> <u>시행에 -----</u> <u>-----.</u></p>

관 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간 요금주준의 형평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직영기업이 제공한 급부의 원가를 보상함과 아울러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및 자본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표준급수조례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군수)이 행한다. 다만, 시장(군수)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자

제38조(정수처분) ① 시장(군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시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에게 상수도 급수공사비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제14조제5항)

2. 미첨부 근거규정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5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이어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울 때)에 해당된다.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에 따른 수급자의 상수도 급수신청 건수와 급수공사비 지원 비용이 명확하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하다.

4. 작성자

- 환경수자원본부 상수도과장 김 용 탁